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5. 15 선고 2013가합238(본소), 2013가합7130(반소) 판결
[토지명도 등 · 주식매매대금 청구]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15. 2. 3 선고 2014나21077(본소), 2014나21084(반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5. 15 선고 2013가합238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A

피고(반소원고)1. B

2. C

변론 종결 2014. 4. 24.

판결 선고 2014. 5.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각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각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발행 액면 금 500원인 보통주식 13,333주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피고 B에게 160,000,000원, 피고 C에게 17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년경부터 문경시 E에서 'F'란 상호로 과실주 등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 B는 2003년경부터 문경시에서 'G'이라는 상호로 산업 디자인 사업을 하던 사람이며, 피고 C은 충남 홍성에서 인테리어업을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2. 23.경 문경시로부터 오미자 가공공장과 동굴 저장시설 등에 대하여 7억 원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게 되자, 2011. 3. 16.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문경시 H 임야 3,306㎡에 위치한 동굴에서 와인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① 원고는 동굴을 15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문경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1억 5천만 원을 카페 공사비로 투자한다.
- ② 피고들은 위 1억 5천만 원으로 카페 설치 공사를 진행하되, 추가 공사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③ 피고 C는 공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피고 B는 위 자금의 집행을 담당하며, 피고들이 위 카페를 경영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한다.
- ④ 지분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30%씩 투자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10%는 투자를 유치하되, 그 전에는 원고가 4%, 피고들이 각 3%의 비율로 분배한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2. 6. 11.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동굴에 카페 영업을 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한 후, D의 발행주식(발행주식 총 16만주, 1주당 금액 500원) 중 33.4%를 원고의 소유로, 각 33.3%를 피고들의 각 소유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피고 B가 D의 대표이사로, 원고 및 피고 C이 D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이후 피고 B는 2012. 11. 20. D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원고가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2. 7.경 이 사건 동굴에 카페를 설치하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2. 9. 7.경 이 사건 카페의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등에 대해 원고 및 피고 B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카페의 경영권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원고는 2013. 12. 17. D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동굴을 제공하고 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출자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동굴에 카페 영업이 가능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영업을 한 후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동굴에 카페의 설치공사를 담당하기로 한 피고들은 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대구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으로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조로 추가 송금받은 금액은 8,500만원에 불과하고 위 금액도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동굴에 카페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대금으로 지출된 것일 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니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서는 일반적인 계약에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지하고 곧바로 상대방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을 구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조합이 해산된 경우 조합재산에 대한 청산절차를 거쳐서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 구성원들 사이에 교부된 금원이 조합재산으로 출자된 것이 아니라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불과할 경우에는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 절차와는 관계없이 일반 소비대차의 법리에 따라 차용한 돈에 대한 반환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갑 제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들은 이 사건 동굴에 카페를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2011. 9.경 원고가 투자한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모두 소진한 사실, ②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카페의 공사대금조로 처음 투자한 1억 5,000만 원 이외의 추가 공사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그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원고 명의로 추가 공사대금을 대출받아오면 이를 이 사건 카페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위 돈은 이 사건 카페의 피고들 지분 수익금으로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대구은행으로부터 2011. 9. 29. 5,000만원, 2011. 10. 18.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대출받아 2011. 10. 1.부터 2011. 10. 18. 사이에 그 중 8,500만 원을 피고 C의 농협계좌(I)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은 이 사건 동업계약상 피고들이 출자하기로 한 부분이고, 이를 전제로 수익분배율을 정한 점, 피고들은 위 돈을 송금받으면서 영업수익금 중 자신들의 몫으로 수시로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송금받은 위 8,500만 원은 피고들이 추가 공사대금의 마련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는 자신이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1억 원을 포함하여 1억 3천만 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9호증(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8,500만 원의 대여사실만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 중 8,500만 원을 피고들에게 교부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무의 변제기 도래 여부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3. 8. 19. 선고 2003다 242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 카페의 지분 수익금으로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카페의 추가 공사대금의 부담 주체,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 및 원고가 피고들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대여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향후 이 사건 카페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포기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카페의 수익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한다는 것은 조건이라기보다는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등 참조), D가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카페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2013. 12. 17.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데(민법 제408조), 이 사건 대여금의 반환채무가 그 성질상 연대채무인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의사표시로써 이를 연대채무로 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대여금 반환채무는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8,500만 원에 대하여 각 1/2에 해당하는 4,250만 원(= 8,500만 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반환채무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3. 12.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카페의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인 2012. 7.경 피고 C에게 1억 7천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C 소유의 D 주식 33.3%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들, D의 감사인 J은 2012. 8. 27.경 D의 사무실에서 피고 C의 지분 매입에 관한 주주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 C의 지분을 위 금액에 매수하는 안건에 대하여 결의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1. 초순경 피고 B의 D 지분 33.3%를 1억 6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피고 B와 구두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각 그 소유 D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위 각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들 주장과 같은 주식매수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이 부분 입증을 위하여 을 제3호증(녹취록)과 증인 J의 증언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식매수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녹취록의 기재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원고가 피고 B에게 주식매수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문구가 발견되지 않는다), 증인 J의 증언은,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원고 및 피고들이 2012. 8. 27.경 개최하였다는 D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주식매매에 대한 계약서 등이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 ② 피고들은 2014. 4.경 자신들이 여전히 D의 주주임을 전제로, 원고의 D 폐업행위, D 소유의 이 사건 동굴 내 시설과 집기를 원고가 임의로 자신의 영업에 사용한 것 등에 대해 원고를 업무상배임, 횡령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손현찬

판사김도연

판사이동현